

kc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절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뷰티산업센터 송지은 선임연구원



목 차

1.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History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3.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1.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Histry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제도

- ➔ 2010.01.01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 ➔ 2011.08.04 화장품법 전면개정 - 유기농화장품 정의 신설
- ➔ 2013.11.08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015.07.01 시행
- ➔ 2018.03.13 화장품법 일부개정 - 천연화장품의 정의 신설
- ➔ 2019.03.14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2019.07.29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목 차

1.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History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3.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 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천연 95 % 이상 등)에 맞는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유기농 10 % 이상, 천연 95 % 이상 등**)에 맞는 화장품



천연 화장품 : 천연 95 % 이상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10% 이상 + 천연 95 % 이상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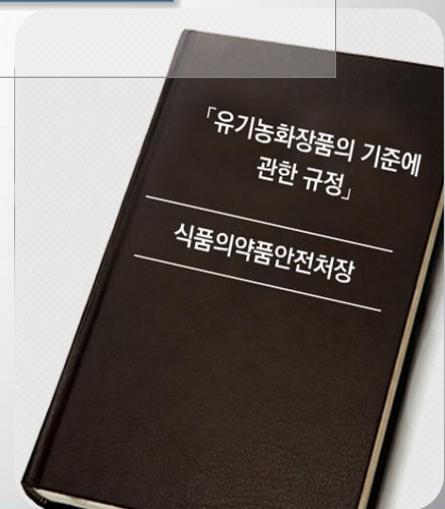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4조	제조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6조	포장
제7조	보관
제8조	원료조성
제9조	자료의 보존
제10조	재검토기한

별표1	미네랄유래원료
별표2	오염물질
별표3	허용기타원료
별표4	허용 합성원료
별표5	제조공정
별표6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별표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2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4조	제조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6조	포장
제7조	보관
제8조	원료조성
제9조	자료의 보존
제10조	재검토기한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유기농원료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외국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2. 식물원료

- 식물(해조류와 같은 해양 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 동물 그 자체(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

4. 미네랄원료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
다만,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



5. 유기농 유래원료

6. 식물유래, 동물성 유래 원료

7. 미네랄유래원료

1. 유기농원료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나. 외국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무항생제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인증농산물정보

인증번호 및 생산자명, 지역으로 인증정보를 검색하세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인증분류: 농산물 유기농산물

농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체

인증품목: **녹차** 일부일치

생산자명:

대표자명:

인증기관: 검색 ※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1일 청주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전체조회건수: 11건

인증번호	대표품목	인증분류	생산자	농가수	농장소재지(대표필지)	인증기간	상세보기
18100292	녹차잎	유기농산물	김영택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2020.02.26 ~ 2021.02.25	Q보기
18100296	녹차잎	유기농산물	문순경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20.02.28 ~ 2021.02.27	Q보기
18100300	녹차잎	유기농산물	홍성직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2020.02.12 ~ 2021.02.11	Q보기
18100306	녹차잎	유기농산물	강재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2020.02.04 ~ 2021.02.03	Q보기
18100310	녹차잎	유기농산물	김서구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2020.03.18 ~ 2021.03.17	Q보기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인증농산물정보

인증표시소개 >

인증정보 >

부정유통신고 >

친환경인증통계 >

행정처분 >

인증정보

인증번호 및 생산자명, 지역으로 인증정보를 검색하세요.

생산자명	김영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증번호	18100292 (구 75-1-185)
인증종류	유기농산물
대표품목	녹차잎
최초인증일자	2012-02-27
인증기간	2020-02-26 ~ 2021-02-25
인증면적	10.972 m
생산계획량	1,200 kg
농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산자구분	개인
대표자성명	김영택
구성원수	1명
이메일	
전화번호	010-3694-1939
인증부가조건	
사후관리결과	생산과정조사 ▶▶ 2017년 ▶▶ 2018년 ▶▶ 2019년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유기농원료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외국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Canada Organic Regime (COR)

The COR is the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that regulates the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organic products in Canada. Previously created under the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the regime is currently outlined in the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which regulates all parties that play a role in the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s. The regulations apply to any organic product that crosses provincial or national borders or bears the Canada Organic Logo. Because only products that cross borders are covered by the COR, provinces may create their own regulations for intra-provincial trade. In this case,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National Organic Program



Cosmetics, Body Care Products, and Personal Care Products

- FDA does not define or regulate the term "organic," as it applies to cosmetics, body care, or personal care products.
 - USDA regulates the term "organic" as it applies to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its National Organic Program (NOP) regulation, 7 CFR Part 205.
 - If a cosmetic, body care product, or personal care product contains or is made up of agricultural ingredients, and can meet the USDA/NOP organic production, handling, processing and labeling standards, it may be eligible to be certified under the NOP regulations.
 - The operations which produce the organic agricultural ingredients, the handlers of these agricultural ingredients, and the manufacturer of the final product must all be certified by a USDA-accredited organic certifying agent.
 - Once certified, cosmetics, personal care products, and body care products are eligible for the same 4 organic labeling categories as all other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eir organic content and other factors:
 - "100 percent organic"--Product must contain (excluding water and salt) only organically produced ingredients. Products may display the USDA Organic Seal and must display the certifying agent's name and address.
 - "Organic"--Product must contain at least 95 percent organically produced ingredients (excluding water and salt).
- Remaining product ingredients must consist of nonagricultural substances approved on the National List or non-organical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not commercially available in organic form, also on the National List. Products may display the USDA Organic Seal and must display the certifying agent's name and address.
-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Products contain at least 70 percent organic ingredients and product label can list up to three of the organic ingredients or "food" groups on the principal display panel. For example, body lotion made with at least 70 percent organic ingredients (excluding water and salt) and only organic herbs may be labeled either "body lotion made with organic lavender, rosemary, and chamomile," or "body lotion made with organic herbs." Products may *not* display the USDA Organic Seal and must display the certifying agent's name and address.
 - Less than 70 percent organic ingredients--Products cannot use the term "organic" anywhere on the principal display panel. However, they may identify the specific ingredients that are USDA-certified as being organically produced on the ingredients statement on the information panel. Products may *not* display the USDA Organic Seal and may *not* display a certifying agent's name and address. (Water and salt are also excluded here.)

	ORGANIC INGREDIENTS
100% ORGANIC All ingredients and processing aids must be certified organic. These foods may use the USDA organic seal as well as 100% organic claim.	 100%
ORGANIC All agricultural ingredients must be certified organic, but product can contain up to 5% non-organic content. These foods may use the USDA organic seal.	 AT LEAST 95%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Contains at least 70% certified organic ingredients; remaining 30% not required to be certified organic, but may not be produced using excluded methods. These foods may not use the USDA organic seal.	AT LEAST 70%
SPECIFIC ORGANIC INGREDIENTS Contains less than 70% certified organic ingredients. May list certified organic ingredients as organic in the ingredient list. These foods may not use the USDA organic seal.	LESS THAN 70%

USDA Organic Chart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유기농원료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외국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Organization	Country	Accreditation Standards
AfriCert Ltd.	Kenya	EU Equivalence, ISO/IEC 17065, GlobalG.A.P.
ALGI International Inc.	USA	ISO/IEC 17065, Textile Exchange
ARGENCERT S.A.	Argentina	IFOAM
AsureQuality Ltd.	New Zealand	COR, IFOAM, Textile Exchange
AUS-QUAL Pty. Ltd.	Australia	ISO/IEC 17065
Balkan Biocert Macedonia DOOEL Skopje	North Macedonia	EU Equivalence, ISO/IEC 17065
Beijing Continental Hengtong Certification Co. Ltd.	China	EU Equivalence, ISO/IEC 17065
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Australia	ISO/IEC 17065
Bio.inspecta AG	Switzerland	NATRUE
Bioagricert S.R.L. Unipersonale	Italy	COR, IFOAM, NATRUE
Biocert International Pvt. Ltd.	India	COR, EU Equivalence, IFOAM, ISO/IEC 17065
Biogro New Zealand Ltd.	New Zealand	COR, EU Equivalence, IFOAM, ISO/IEC 17065, NATRUE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France S.A.S.	France	COSMOS
Canadian Seed Institute dba Centre for Systems Integration	Canada	COR, ISO/IEC 17065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COMMERCIAL NAME	CHARACTERISTICS	INCI	BRAND NAME	COMPANY NAME	CERTIFIED BY
organic					ECOCE ▼
ORGANIC ALOE VERA POWDER 200X - ECOCERT GREENLIFE CERTIFIED	PPAI 100% ; PPAI ORGANIC 100% ;	ALOE BARBADENSIS LEAF JUICE POWDER	SOLLICE BIOTECH	SOLLICE BIOTECH	ECOCERT
102106 - Hemp Oil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CANNABIS SATIVA SEED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103043 - NEO ACTIPONE® ALOE VERA (Organic)	PPAI 99,9% ; PPAI ORGANIC 99,9% ; CPAI 0,1% ;	Aloe Barbadensis Leaf Juice Powder, Citric acid	Symrise	SYMRISE AG	ECOCERT
104379 - BAOBAB OIL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Adansonia Digitata Seed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104547 - TAMANU OIL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Calophyllum Inophyllum Seed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104727 - HEMP OIL CANADA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Cannabis Sativa Seed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105330 - Olive Oil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OLEA EUROPAEA FRUIT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172792 Jojoba Oil (Organic)	PPAI 100% ; PPAI ORGANIC 100% ;	Simmondsia Chinensis Seed Oil	Symrise	SYMRISE AG	ECOCERT
271274 - ACTIPONE® WHITE TEA (ORGANIC) GW	PPAI 3% ; PPAI ORGANIC 3% ; CPAI 41,1% ;SYNTH 0,7% ;	Water (Aqua), Glycerin,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Lactic acid,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Symrise	SYMRISE AG	ECOCERT
382409 Extrapone® Lemon (Organic) GW	PPAI 28% ; PPAI ORGANIC 28% ; CPAI 39,78% ;SYNTH 0,7% ;	Water (Aqua), Glycerin, Citrus Limon (Lemon) Juice*,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Symrise	SYMRISE AG	ECOCERT
443170 - Extrapone® Black Currant (Organic) GW	PPAI 5% ; PPAI ORGANIC 5% ; CPAI 39,78% ;SYNTH 0,7% ;		SYMRISE AG	SYMRISE AG	ECOCERT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물리적공정

8. 천연원료

1. 유기농원료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외국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2. 식물원료

- 식물(해조류와 같은 해양 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 동물 그 자체(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

4. 미네랄원료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
다만,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

9. 천연유래원료

화학적·생물학적 공정

5. 유기농 유래원료

6. 식물유래, 동물성 유래 원료

7. 미네랄유래원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2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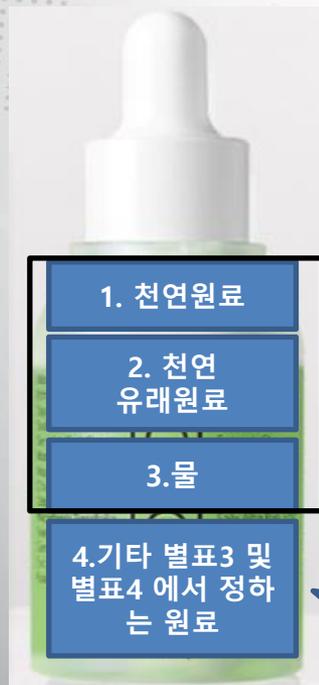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4조	제조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6조	포장
제7조	보관
제8조	원료조성
제9조	자료의 보존
제10조	재검토기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함량 계산, 별표 7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별표2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원료
 2. 천연유래원료
 3. 물
 4. 기타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원료
- ② 합성원료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1항 제4호의 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천연화장품

95 % 이상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1항 제4호의 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유기농 화장품

95 % 이상
+
"유기농 10 % 이상"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1항 제4호의 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3

허용기타원료

다음의 원료는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추출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용매만 사용 가능하나, 다음 원료는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원료	제한
베타인(Betaine)	
카라기난(Carrageenan)	
<u>레시틴 및 그 유도체(Lecithin and Lecithin derivatives)</u>	
토코페롤, <u>토코트리엔놀(Tocopherol/ Tocotrienol)</u>	
오리자놀(Oryzanol)	
<u>안나토(Annatto)</u>	
카로티노이드 / 잔토피일(Carotenoids / Xanthophylls)	
<u>앵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Absolutes, Concretes, Resinoids)</u>	천연화장품에만 허용
라놀린(Lanolin)	
피토스테롤(Phytosterol)	
<u>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Glycosphingolipids and Glycolipids)</u>	
잔탄검	
알킬 베타인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제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4

허용 합성원료

1. 합성보존제 및 변성제
2.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1.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원료	제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Benzoic Acid and its salts)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테하이드로아세트릭애씨드 및 그 염류(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s)	
데나토늄벤조에이트, 3급부틸알코올, 기타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Denatonium Benzoate and Tertiary Butyl Alcohol and other denaturing agents for alcohol (excluding phthalates))	(관련 법령에 따라) 에탄올에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Tetrasodium Glutamate Diace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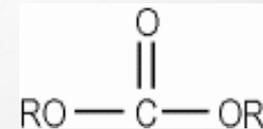
2.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분류	사용 제한
디아킬카보네이트(Dialkyl Carbonate)	
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Alkylamidopropylbetaine)	
알킬메칠글루카미드(Alkyl Methyl Glucamide)	
알킬암포아세테이트 / 디아세테이트(Alkylamphoacetate / Diacetate)	
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Alkylglucosidecarboxylate)	
카르복시메칠 - 식물 폴리머(Carboxy Methyl - Vegetal polymer)	
식물성 폴리머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Vegetal polymer - Hydroxypropyl Trimonium Chloride)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디아킬디모늄클로라이드(Dialkyl Dimonium Chloride)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하이드로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Alkyl dimonium Hydroxypropyl Hydrolyzed Vegetal protein)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전체 제품에서 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석유화학 부분(%)

$$= \text{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중량} / \text{전체 분자량}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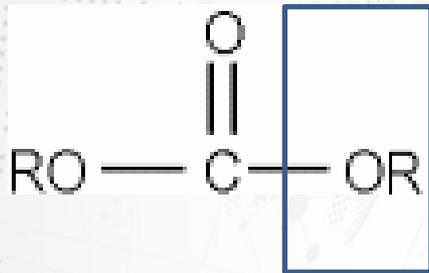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전체 제품에서 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석유화학 부분(%)

$$= \text{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 중량} / \text{전체 분자량}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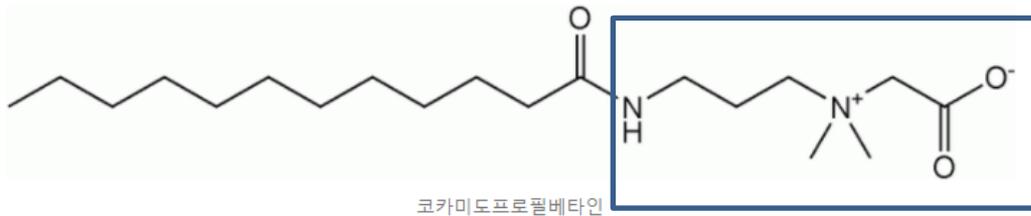
(예) 분자량 100, 석유화학부분 : 60

100 g 용량의 제품을 만든다면,
석유화학 부분은 2 g 이상 사용하면 안되므로,

(계산) $2 : 0.6 = X : 1$, $X = 3.33$

∴ 해당 원료의 경우, 최대 3.3 g 사용가능

(예) 10 %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수용액, 화장품 원료 5 % 사용 가능할까?



- 전체 분자량 : 342 g/mol
- 석유화학 부분의 분자량 : 159 g/mol
-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석유화학 부분 : $159 / 342 \times 100 = 46.4\%$

- 10 %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수용액의 석유화학 부분
 $0.464 \times 0.1 \times 100 = 4.64\%$
- 완제품에서 5 % 사용하는 경우 석유화학 부분
 $0.0464 \times 0.05 \times 100 = 0.23\%$

∴ 10 %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수용액 화장품 원료 5 % 사용 가능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조과정

- ① 원료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별표 5와 같다.
- ②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대해 금지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2.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3. 니트로사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구분	공정명	비고
허용되는 공정	흡수(Absorption) / 흡착(Adsorption)	불합성 금지제
	탈색(Leaching) / 탈화(Deodorization)	불합성 금지제
	증기(Crystall)	
	칼슘염화(Chelating)	
	상온액분리(Decanting)	
	건조(Dehydration / Drying)	
	탈색, 고압(Decoloring) / 탈색, 회전(Decolouring)	
	탈색, 건조(Despersation)	용기 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용매 사용
	증류(Distillation)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용매 사용 (물, CO ₂ 등)
	추출(Extractions)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용매 사용 (물, 알코올, 에탄 등)
	여과(Filtration)	불합성 금지제
	동결건조(Lyophilization)	
	혼합(Mixing)	
	상출(Precipitation)	
	압착(Pressure)	
물리적 공정	탈색(Whitening)	열처리
	탈색(Sanitization)	UV, IR, Microwave

나.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코올, 에스테르, 알데하이드, 할로젠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구분	공정명	비고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알킬화(Alkylation)	
	아미노이드 형성(Formation of amide)	
	칼슘화(Calcination)	
	탄화(Carbonization)	
	중축 / 추가(Condensation / Addition)	
	복합화(Complexation)	
	이산화탄소 고정화(CO ₂ sequestration) / 이산화탄소 고정화(Decarboxylation)	
	에틸화(Ethylation)	
	광합성 기술(Biotechnology) / 자연발효(Natural fermentation)	
	수화(Hydration)	
	수소화(Hydrogenation)	
	기후변화(Indolization)	
	산화(Oxidation)	
	환원(Reduction)	
	아미노산 합성(Manufacture of amino acid and Quaternization)	아미노산, 4-기화합물(Formation of amide and Quaternization)
비누화(Saponification)		
이온교환(Ionic Exchange)		
오존분해(Ozonolysis)		

구분	공정명	비고
금지되는 공정	탈색(Leaching/Deodorization)	용출 유래
	방사선 조사(Irradiation)	알라신, 갈라신
	결빙(Freeze-drying)	
	수확(Maceration)	물, 알 등 천연원 부위를 유래함
	마이크로파 건조(Microwave)	정확한 온도 조절을 할 수 없음
	겔화(Gelation)	
	압착(Pressing) / 분쇄(Crushing)	
	포송기(Traps)	
	TV 처리(TV Treatment)	
	진공(Vacuum)	
	로스팅(Roasting)	
	탈색(Decoloration), 원소나이트, 숯가루, 표백제, 과산화수소, 오존 사용	
	나.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알코올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코올, 에스테르, 알데하이드, 할로젠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별표 5 제조과정

1. 허용되는 공정
 - 가. 물리적 공정 : 물이나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용매로 추출해야 한다.
 - 나.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코올, 에스테르, 알데하이드, 할로젠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
2. 금지되는 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 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 및 세척되어야 한다.
- ② 작업장과 제조설비의 세척제는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6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their stabilizing agents)

과초산(Peracetic acid)

락티에씨드(Lactic acid)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계면활성제(Surfactant)

- 재생가능

- EC50 or IC50 or LC50 > 10 mg/l

- 혐기성 및 호기성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생분해 될 것(OECD 301 > 70% in 28 days)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their stabilizing agents)

과초산(Peracetic acid)

락티에씨드(Lactic acid)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계면활성제(Surfactant)

- 재생가능

- EC50 or IC50 or LC50 > 10 mg/l

- 혐기성 및 호기성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생분해 될 것(OECD 301 > 70% in 28 days)

- 에톡실화 계면활성제는 상기 조건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전체 계면활성제의 50% 이하일 것
- 에톡실화가 8번 이하일 것
-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 않을 것

석회장석석유(Lime feldspar-milk)

소듐카보네이트(Sodium carbonate)

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

시트릭에씨드(Citric acid)

식물성 비누(Vegetable soap)

아세트에씨드(Acetic acid)

열수와 증기(Hot water and Steam)

정유(Plant essential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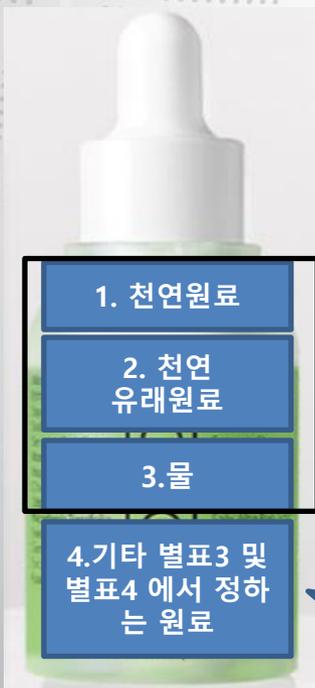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

무기산과 알칼리(Mineral acids and alkalis)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원료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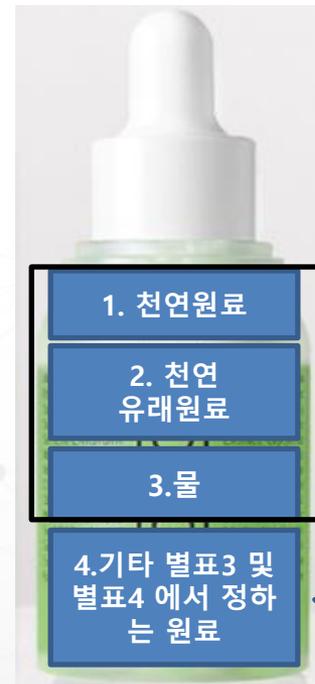
- ① 천연화장품은 별표 7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유기농화장품은 별표 7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천연 및 유기농 함량의 계산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천연화장품

95 % 이상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1항 제4호의 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유기농 화장품

95 % 이상

+
"유기농 10 % 이상"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1항 제4호의 원료는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별표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1. 천연 함량 계산 방법

천연 함량 비율(%) = 물 비율 + 천연 원료 비율 + 천연 유래 원료 비율 - 천연 유래 원료의 석유화학 부분 비율

천연 유래 원료의 석유화학 부분 비율(%) =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 ×

(화학 부분 물질량 / 천연 유래 원료의 전체 분자량) × 100

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유기농 함량 비율은 유기농 원료 및 유기농유래 원료에서 유기농 부분에 해당되는 함량 비율로 계산한다.

가. 유기농 인증 원료의 경우 해당 원료의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한다.

나. 유기농 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물, 미네랄 또는 미네랄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물은 제품에 직접 함유되거나 혼합 원료의 구성요소일 수 있다.

2) 유기농 원료만 사용하거나, 유기농 용매를 사용하여 유기농 원료를 추출한 경우 해당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은 100%로 계산

3) 수용성 및 비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용매는 최종 추출물에 존재하는 양으로 계산하며 물은 용매로 계산하지 않고, 동일한 식물의 유기농과 비유기농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 혼합물은 유기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 (예: 유기농 글리세린이나 유기농 알코올의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

유기농 함량 비율(%) = {(투입되는 유기농 원료-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료)}

/ (투입되는 총 원료 - 회수 또는 제거되는 원료)} × 100

최종 물질이 1개 이상인 경우 분자량으로 계산한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예1) 증류추출물의 경우

(로즈마리 1 g + 물 75 g = 천연원료(100 %) 75 g) + (유기농인삼/생물 10 g + 물 20 g = 유기농원료(50 %) 20 g)

∴ 95 g 과 기타원료 5 g으로 만든 제품은 유기농 화장품이라 할 수 있음.

유기농 함량은 10 g으로 10 % 기준에 맞고, 전체 제품에서 천연 함량 95 %이상(물 포함)이 됨으로 유기농 화장품 기타 5 g + 물 84 g + 천연 1 g + 유기농 10 g = 100 g (100 %)로 만들어진 제품임.



(예2) 증류추출물의 경우 (로즈마리 1 g + 물 98 g / 천연원료(100 %) 98 g) + (기타 허용합성원료 2 g)

∴ 100 g (100 %) 로 만든 제품은 천연 화장품

로즈마리 1 g + 물 97 g + 기타허용합성원료 2 g = 100 g (100 %)로 만들어진 제품임.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1) 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경우

1단계: 비율(ratio)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용매)] (비율(ratio)이 1이상인 경우 1로 계산)

2단계: 유기농 함량 비율(%) = {[비율(ratio)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 신선한 원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량에 아래 일정 비율을 곱해야 한다.

나무, 껍질, 씨앗, 견과류, 뿌리	1 : 2.5	잎, 꽃, 지상부	1 : 4.5
과일	1 : 5	물이 많은 과일	1 : 8

[예] 유기농 건조 카모마일 3 kg을 물 50 kg, 수용성 용제 50 kg (유기농30 kg, 비유기농 20 kg) 로 추출하여,
총 100 kg 생산

(Step1) 유기농 건조 카모마일 3 kg → 신선한 원물로 복원 $3 \times 4.5 = 13.5$ kg

(Step2) 비율(ratio) 계산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용매)]

$$= [13.5 / (100 - 50)] = 0.27$$

(Step3) 유기농 함량 비율(%) = {[비율(ratio)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 \{[0.27 \times (100 - 50) / 100] + [30 / 100]\} \times 100$$

$$= 43.5 \%$$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2) 물로만 추출한 원료의 경우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text{신선한 유기농 원물} / \text{추출물}) \times 100$$

- 신선한 원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량에 아래 일정 비율을 곱해야 한다.

나무, 껍질, 씨앗, 견과류, 뿌리	1 : 2.5	잎, 꽃, 지상부	1 : 4.5
과일	1 : 5	물이 많은 과일	1 : 8

[예] 유기농 건포도 3 kg을 물 100 kg로 추출하여, 총 100 kg 생산

(Step1) 유기농 건조 건포도 3 kg → 신선한 원물로 복원 $3 \times 5 = 15$ kg

(Step2) 유기농 함량 비율(\%)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100
= $(15/100) \times 100 = 15$ %

별표 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3) 비수용성 원료인 경우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text{신선 또는 건조 유기농 원물} + \text{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text{신선 또는 건조 원물} + \text{사용하는 총 용매}) \times 100$$

[예1] 유기농 라벤더 10 kg을 용매 90 kg (유기농 50 kg, 비유기농 40 kg)로 추출

$$\begin{aligned}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text{신선 또는 건조 유기농 원물} + \text{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text{신선 또는 건조 원물} + \text{사용하는 총 용매}) \times 100 \\ &= (10+50) / (10+90) \times 100 = 60 \% \end{aligned}$$

[예2] 유기농 라벤더 10 kg을 유기농 용매 50 kg 로 추출

$$\begin{aligned}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text{신선 또는 건조 유기농 원물} + \text{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text{신선 또는 건조 원물} + \text{사용하는 총 용매}) \times 100 \\ &= (10+50) / (10+50) \times 100 = 100 \% \end{aligned}$$

[예3] 유기농 라벤더 10 kg을 비유기농 용매 50 kg 로 추출

$$\begin{aligned}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text{신선 또는 건조 유기농 원물} + \text{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text{신선 또는 건조 원물} + \text{사용하는 총 용매}) \times 100 \\ &= (10+0) / (10+50) \times 100 = 16.67 \% \end{aligned}$$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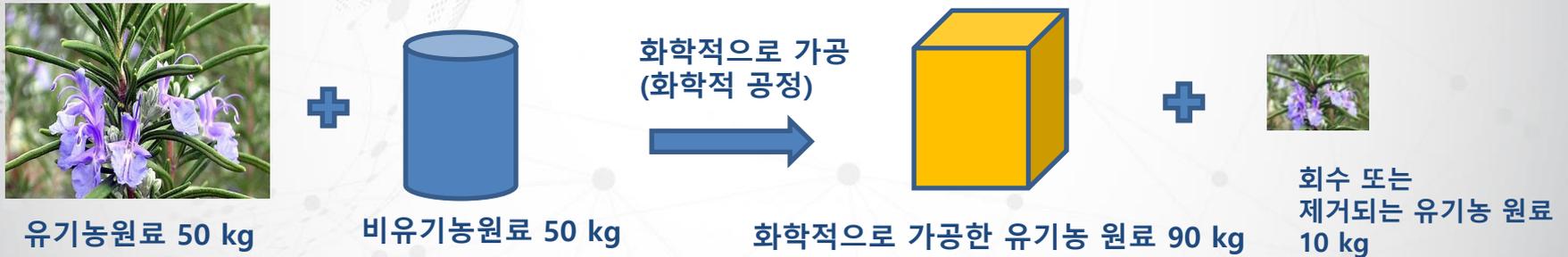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

(예: 유기농 글리세린이나 유기농 알코올의 함량 비율 계산)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frac{\{(\text{투입되는 유기농 원물}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물})\}}{\{(\text{투입되는 총 원료}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원료})\}} \times 100$$

최종물질이 1개 이상인 경우 분자량으로 계산한다



[예] 유기농원료 50 kg, 비유기농 원료 50 kg 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가공한 유기농 원료 90 kg, 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료 10 kg 을 만들었다면, 유기농함량은?

$$\begin{aligned}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frac{\{(\text{투입되는 유기농 원물}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물})\}}{\{(\text{투입되는 총 원료}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원료})\}} \times 100 \\ &= \{(50 - 10) / (100 - 10)\} \times 100 = 44.4 \% \end{aligned}$$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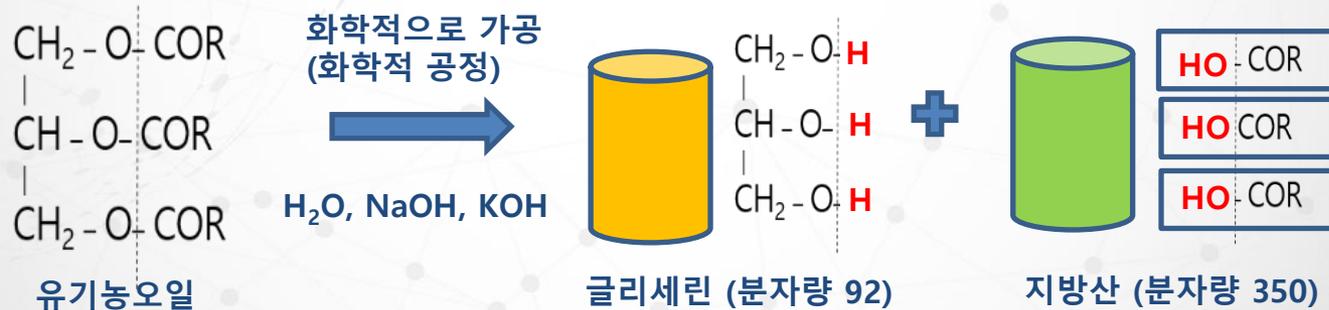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

(예: 유기농 글리세린이나 유기농 알코올의 함량 비율 계산)

$$\text{유기농 함량 비율(\%)} = \left\{ \frac{\text{투입되는 유기농 원물}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물}}{\text{투입되는 총 원료} - \text{회수 또는 제거되는 원료}} \right\} \times 100$$

최종물질이 1개 이상인 경우 분자량으로 계산한다

[예] 유기농오일을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을 만들었다. 글리세린과 지방산의 유기농 함량은?



- 유기농 글리세린 함량(%) = (글리세린 분자량 - 수소분자량) / 전체분자량
= (92 - 3) / 92 = 96.7%
- 유기농 지방산 함량(%) = (지방산 분자량 - OH분자량) / 전체분자량
= (350 - 17) / 350 = 95.1%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 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보관

- ①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및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보존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4조	제조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6조	포장
제7조	보관
제8조	원료조성
제9조	자료의 보존
제10조	재검토기한

별표1	미네랄유래원료
별표2	오염물질
별표3	허용기타원료
별표4	허용 합성원료
별표5	제조공정
별표6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별표7	천연 및 유기농 함량 계산법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미네랄유래원료

아래 미네랄 유래 원료의 Mono-, Di-, Tri-, Poly-, 염도 사용 가능하다.

구리가루(Copper Powder CI 77400)
 규조토(Diatomaceous Earth)
 디소듐포스페이트(Disodium Phosphate)
 디칼슘포스페이트(Dicalcium Phosphate)
 디칼슘포스페이트디하이드레이트(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마그네슘설페이트(Magnesium Sulfate)
 마그네슘실리케이트(Magnesium Silicate)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Magnesium Aluminium Silicate)
 마그네슘옥사이드(Magnesium Oxide CI 77711)
 마그네슘카보네이트(Magnesium Carbonate CI 77713(Magnesite))
 마그네슘클로라이드(Magnesium Chloride)
 마그네슘카보네이트하이드록사이드 (Magnesium Carbonate Hydroxide)
 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Magnesium Hydroxide)
 마이카(Mica)
 말라카이트(Malachite)
 망가니즈비스오르토포스페이트(Manganese bis orthophosphate CI 77745)
 망가니즈설페이트(Manganese Sulfate)
 바륨설페이트(Barium Sulphate)

벤토나이트(Bentonite)
 비스머옥시클로라이드(Bismuth Oxychloride CI 77163)
 소듐글리세로포스페이트(Sodium Glycerophosphate)
 소듐마그네슘실리케이트(Sodium Magnesium Silicate)
 소듐메타실리케이트(Sodium Metasilicate)
 소듐모노플루오로포스페이트(Sodium Monofluorophosphate)
 소듐바이카보네이트(Sodium Bicarbonate)
 소듐보레이트(Sodium borate)
 소듐설페이트(Sodium Sulfate)
 소듐실리케이트(Sodium Silicate)
 소듐카보네이트(Sodium Carbonate)
 소듐치오설페이트(Sodium Thiosulphate)
 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
 소듐포스페이트(Sodium Phosphate)
 소듐플루오라이드(Sodium Fluoride)
 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
 실리카(Silica)
 실버(Silver CI 77820)
 실버설페이트(Silver Sulfate)
 실버씨트레이트(Silver Citrate)
 실버옥사이드(Silver Oxide)
 실버클로라이드(Silver Chloride)
 씨솔트(Sea Salt, Maris Sal)
 아이런설페이트(iron Sulfate)
 아이런옥사이드(iron Oxides CI 77480, 77489, 77491, 77492, 77499)
 아이런하이드록사이드(iron Hydroxide)
 알루미늄아이런실리케이트(Aluminium Iron Silicates)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가루(Aluminium Powder CI 77000)
 알루미늄설페이트(Aluminium Sulphate)
 알루미늄암모니움설페이트(Aluminium Ammonium Sulphate)
 알루미늄옥사이드(Aluminium Oxide)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ium Hydroxide)
 암모늄망가니즈디포스페이트(Ammonium Manganese Diphosphate CI 77742)
 암모늄설페이트(Ammonium Sulphate)
 울트라마린(Ultramarines, Lazurite CI 77007)
 징크설페이트(Zinc Sulfate)
 징크옥사이드(Zinc oxide CI 77947)
 징크카보네이트 (Zinc Carbonate, CI 77950)
 카올린(Kaolin)
 카퍼설페이트(Copper Sulfate, Cupric Sulfate)
 카퍼옥사이드(Copper Oxide)
 칼슘설페이트(Calcium Sulfate CI 77231)
 칼슘소듐보로실리케이트(Calcium Sodium Borosilicate)
 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Calcium Aluminium Borosilicate)

별표2

오염물질

중금속(Heavy metals)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s)
농약(Pesticides)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Dioxins & PCBs)
방사능(Radioactivity)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곰팡이 독소(Mycotoxins)
의약 잔류물(Medicinal residues)
질산염(Nitrates)
니트로사민(Nitrosamines)

상기 오염물질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 제품에서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정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2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제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4조	제조공정
제5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6조	포장
제7조	보관
제8조	원료조성
제9조	자료의 보존
제10조	재검토기한

① 천연원료, ② 천연유래원료, ③ 물, ④기타 별표3 및 별표4에서 정하는 원료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 별표 5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세척. 세척제리스트 별표6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olystyrene foam) 사용할 수 없음

유기농 원료 및 유기농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 원료 및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함량 계산, 별표 7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
제조일(수입일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간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목 차

1.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History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3.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 기반 구축 (KCL)

<http://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1002007>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 귀하(참조: 품질인증팀) (우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경유)
제목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알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1. 관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975호(2019. 8. 12.)

2. 귀 기관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우리 처에 신청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불일의 지정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화장품법령 및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 수행, 준수사항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증기관 지정서(우편송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무관	한번애	사무관	정영이	화장품정책과장	최미라	바이오생약국장	2019. 10. 29
합조자							김자연
시행	화장품정책과-7379	(2019. 10. 30.)	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405	팩스번호 043-719-3400	/ yaorhaehan@korea.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1 -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사업안내 | 고객센터 | 알림/소식 | KCL소개 | 온라인검사시스템

사업안내

시험/검사 | 인증/심사 | R&D | 교육/숙련도/컨설팅 | 해외인증/해외협력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인프라구축 | 지역사업본부

KS-KC 인증 및 조달검사 | 품질인증 | KAS V-check 마크 | 의뢰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 의뢰기기 기술문서 심사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홈 > 사업안내 > 인증/심사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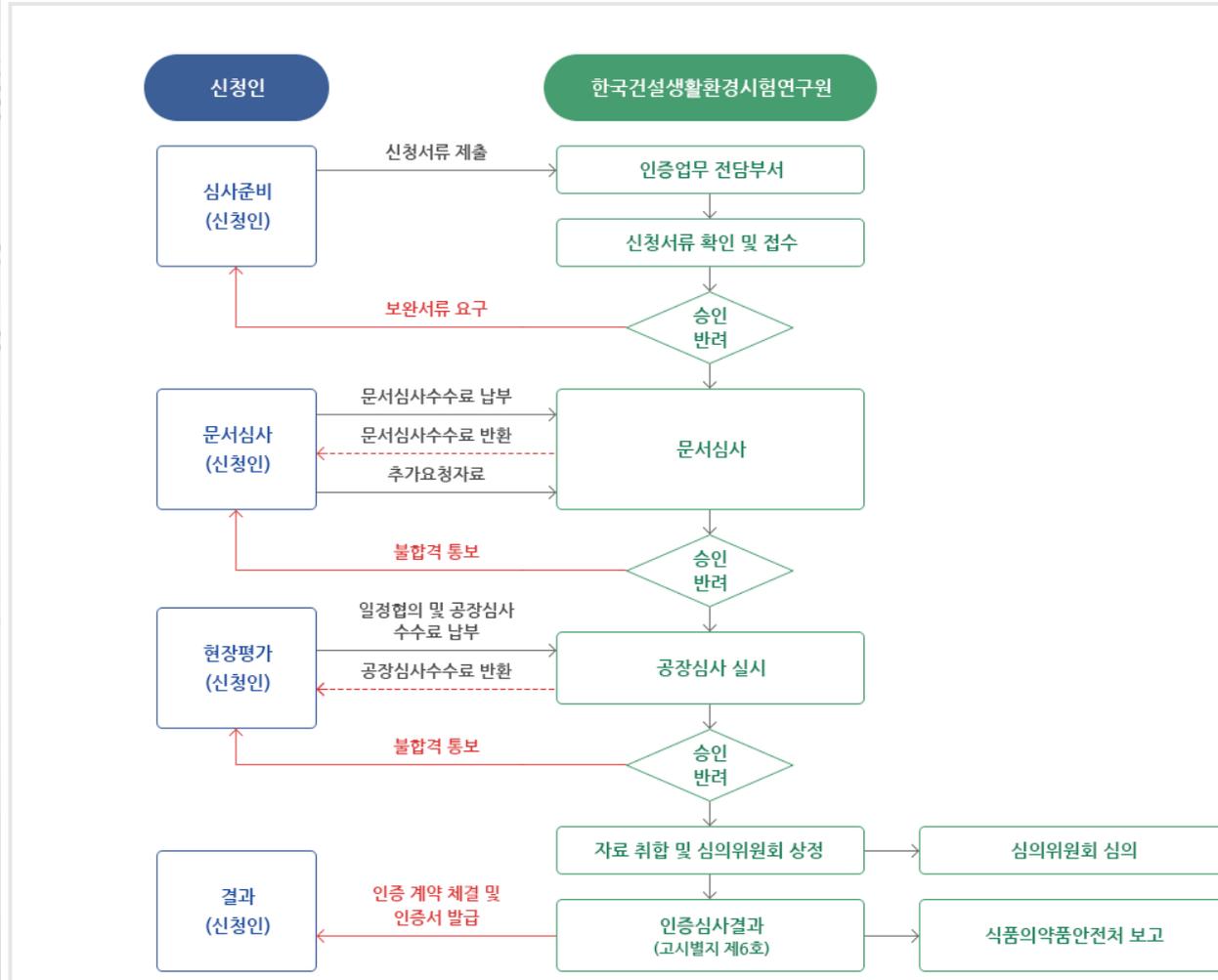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분야

<p>천연 화장품</p>  <p>식품의약품안전처</p>	<p>유기농 화장품</p>  <p>식품의약품안전처</p>
---	--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 업무 절차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 인증심사 구비서류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 ◆ 대표자 서약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 천연, 유기농 인증서 (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 원료별 MSDS 및 원료사용질문서 (인증서 제출 시 원료사용질문서 생략 가능)
-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규격서 또는 제품표준서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도
 - 공정, 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 제품의 용기, 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 및 원료보관 사진
- ◆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의 경우)

❖ 인증 관련 양식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



원료, 공정, 세척제 체크리스트



원료 사용 질문서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제품표준서



❖ 수수료

연번	종류	수수료(부가세별도)
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서류·최초인증)	1,140,000원
2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품목추가당)	250,000원/품목추가당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공장)	1,100,000원 + 출장비
4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서류·최초품목)	760,000원
5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품목추가당)	200,000원/품목추가당
6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공장)	550,000원 + 출장비
7	인증사항 변경 보고	28,000원
8	인증서 재발급	28,000원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원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국회실사에 소포되는 제품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화장품제조업자 <input type="checkbox"/> 화장품책임판매업자 <input type="checkbox"/> 대학·연구기관·연구소 등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인증구분	<input type="checkbox"/> 천연화장품 <input type="checkbox"/> 유기농화장품 <input type="checkbox"/> 기존 인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명		
	제품의 책임판매업자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책임판매업자 소재지		
	제품 제조소	<input type="checkbox"/> 자체제조소 <input type="checkbox"/> 외부위탁 <input type="checkbox"/> 외국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조업자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업자 소재지			

「화장품법」 제1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발달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 등에 대한 정보 2.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방법, 용기 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3. 인증서 철회 및 인증말종 제품에 최신판 인증기관에 직할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일 경우)
------	--

공 의 서

본인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입
·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결 처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 [백상지 80g/㎡(저장용)]

대표자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본 업체는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 14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에 따라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결과 등에 관한 모든 요령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업체는 인증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단순변심이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보완사항의 시정조치 불가 등의 이유로 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이 불가함을 동의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평가에 시험, 검사, 심사, 재심사, 사후관리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조사 및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록(내부감사보고서 포함)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을 완벽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인증 신청 후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업체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인증마크 표시를 할 것이며,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오도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업체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인증문서의 반환 및 인증마크가 표기된 제품의 회수를 이행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인증서, 인증마크, 보고서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업체는 문서, 홍보물, 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인증획득 현상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시 신규 심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의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인증본부장)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원료 사용 질문서



원료의 생산과정, 첨가물, 각 성분에 대한 금지 공정 및 금지 원료의 사용 여부, 공정 중 용매와 첨가물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
: 원료의 원물 부터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

6. 미생물 또는 생물 유래성분 (Microbial or biotechnological ingredients)

해당 없을 경우 다음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Please check the following box if this section is not applicable) NA
원료는 생물적인 과정(발효, 효소 가수 분해, 등)으로 생산된 성분 또는 시약을 포함합니까?
(Does your raw material contain ingredients or reagents that come from a biotechnology process (fermentation, enzymatic hydrolysis etc.)?) YES NO

해당이 될 경우에 생체 촉매(야스트, 세균, 효소 등) 및 생체 촉매의 유래를 적어 주세요.
(If yes, please precise the type of biocatalyst(s) used (yeast, bacteria, fungi, enzymes etc.) and it's/their origin(s))

사용되는 생체 촉매는 유전자 변형 생체 촉매 또는 GMO로 생산된 생체 촉매입니까?
(Are the biocatalyst(s) used genetically modified or produced from GMD?) YES NO

해당이 되면 해당되는 시약성분을 기재해 주세요
(If yes please could you list here the reagents/ingredients concerned)

생물적인 과정에 사용되는 공급원료는 유전자 변형 생물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 유도체가 적용되지 않았고 천연, 식물 또는 미생물의 원료 유래입니까? (Is the feedstock in biotechnology processes only from natural, vegetable or microbial raw materials, without us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r their derivatives?) YES NO

7. 석유화학모이어티 원료 (Ingredients containing petrochemical moieties)

해당 없을 경우 다음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Please check the following box if this section is not applicable) NA
생산된 원료에 석유화학 물질(식약처 기준 [별표4] 허용합성원료 2. 천연유래와 석유화학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이 포함됩니까?
(Does your manufactured ingredient contain a petrochemical moiety, as authorized in the MFDS Standard (Appendix [V.2])?) YES NO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성분명과 석유화학 비율을 기재하십시오.
(If yes, please specify the ingredient(s) involved as well as the % of this moiety.)

PART III. 용매와 첨가물 (Solvents and Manufacturing auxiliaries)

생산 과정(예:추출,세척, 결정화)에서 용매가 사용됩니까?
(Are solvents us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e.g. extraction, washing, crystallization)?) YES NO

해당이 될 경우, 사용하는 용매를 기입하십시오.
(If yes, please specify the name of the solvents used)

사용되는 용매는 최종적으로 회수되거나 제거됩니까?
(Are the solvents recovered and removed from the final product?) YES NO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예: pH조절제, 촉매)가 사용됩니까?
(Are manufacturing auxiliaries(e.g. pH adjuster, catalyst) used during the synthesis of the ingredients?) YES NO

해당이 될 경우, 사용하는 첨가물을 기입하십시오.
(If yes, please specify the name of the auxiliaries used)

제조 중 첨가물은 최종적으로 제거됩니까?
(Are the manufacturing auxiliaries removed?) YES NO

PART IV. 금지공정 및 금지성분 (Prohibities processes and components)

1. 원료의 유효성분, 반응물질 또는 첨가물을 생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을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ther the following chemical processes are used during the manufacture of any ingredients, reactants or auxiliaries in the commercial reference)

탈색, 탈취(Bleaching-Deodorisation) YES NO

방사선 조사(Irradiation) YES NO

설통화(Sulphonation) YES NO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Use of ethylene oxide, propylene oxide or other alkylene oxides) YES NO

수은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Treatments using mercury) YES NO

포름알데하이드 사용(Use of formaldehyde) YES NO

2. 원료의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Indicate whether the following components are included in any ingredients, reactants or auxiliaries in the commercial reference)

중금속 (Heavy Metals) YES NO

방향족 탄화수소 (Aromatic hydrocarbons) YES NO

농약 (Pesticides) YES NO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Dioxins & PCBs) YES NO

방사능(Radioactivity) YES NO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YES NO

곰팡이 독소(Mycotoxins) YES NO

의약 잔류물(Medicinal residues) YES NO

질산염(Nitrates) YES NO

니트로사민(Nitrosamines) YES NO

서명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인증 신청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자료로써 정확하고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 내용 중에 정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인증기관에서 승인된 내역이 무효해질 수 있습니다. (Declaration: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ll the information supplied in this form is accurate. Should any of this information be found to be false, any subsequent approval granted by the Certification body will be revoked.)

회사명 (COMPANY NAME)	
날짜 (DATE)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SIGNATURE)	

본 문서를 전자 작성했고 위 내용을 동의합니다.

(I have completed this form electronically and confirm I am in agreement with the declaration above) YES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1. 함량의 구분 : INCI name, 원료명, 원료사, 성분, 함량비, 성분 최종 비율
2. 원료의 구분 : 성분 구분
3. 공정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최종확인		FALSE		전체합이 100%보다 크면 안됨 (비량백이 출간색으로 체크 득점 안됨)		유기농 비율 10% 이상 (유기농화장품)															
원료개수		0		전체중량합		0.00%		유기농비율		0.00%											
함량의 구분 (비고: 파란색은 예시이며, 성분별 열을 추가하시어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유기농/ 천연 인증, 기한에 대한 정보				원료의 구분 (각 원료별 해당 구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천연·유기농화장품은 고시 제3호 의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정의 구분		비고			
No. (연번)	INCI Name (INCI명)	Raw Material Name (원료명)	RM Manufacturer (원료사)	RM % in FP (함량비)	Ingredients % in RM (성분비)	Actual Wt(%) (성분별 최종 비율)	Total of Organic(%) (유기농 비율)	유기농/ 천연원료 인증 유무 (인증기관명)	인증받았을 경우 (인증일자)	인증일자/ 인증유효기한	유기농 원료	유기농 유래원료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허용기타원료	합성원료	Manufacturing Process of RM (원료의 제조공정)	Use of solvents or auxiliaries (공정상 사용된 용매 또는 첨가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서명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회사명	
날짜 (DATE)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본 문서를 전자 작성했고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the way to trust **KCL**

감사합니다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Tel.82-2-2102-2550 Fax.82-2-855-1802
E-mail. cosmetics@kcl.re.kr



- 수출입제품해외인증 : 02-3415-8787, 8846, ○ 중소기업인증(수출바우처) : 02-3415-8815,24, ○ 인증교육 : 02-3415-8819
- 연구기반활용지원사업 : 02-3415-8750 ○ 화장품 관련 시험검사 : 02-2102-2574, 2577, cosmetic@kcl.re.kr